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803호 2023. 12. 18.(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3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3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4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6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6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	6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6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7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8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7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0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103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88호 인천광역시서구출장통제규정 폐지규정————— 110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11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1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3호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12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3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135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1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140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14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관계”를 “5급 상당 이상의 관계”로 한다.

제1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탁기관의 의무

가. 조례 및 민간위탁계약서 준수 및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나.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다. 위탁받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담 징수행위 금지

라. 위탁받은 시설의 중·개축 또는 추가 신축의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

마.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 금지.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해야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위탁사무를 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도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3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통·반장 위촉)”을 “(통·반장의 임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통·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둘 수 있되,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측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구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청, 소방서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개요 (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권고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안내 등 홍보) 구청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행사 참여자 또는 군중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음성안내 또는 영상물 상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배치, 임무 등에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응급·구조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할 것.
3. 안전관리요원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을 “노인복지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을 “노인복지사업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용수익금”을 “운용수익금과 출연금”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사회복지사업”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3호 중 “사업(기초생활보장 자활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근 유급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근

유급직원은 다음”을 “사무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② 사무국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

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사업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사업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사업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동보조기기 보험)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가 등 자문)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2.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제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천서부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인천서부소방서, 인천검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정원의 조성·진흥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구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7.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구 내 민간정

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정원 중 서구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정원 입장료 및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구민정원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구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구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서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구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구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원문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원예, 화훼, 조경, 경관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구민정원사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동시설 등 고객”을 “고객”으로, “위한”을 “위한 공동 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를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4의2.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

가.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1)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 지원

4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등 지원 및 지급(별표2)

가. 홍보물품 지급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상점가 방문이벤트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상인회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SNS 서포터즈 지원 기준(제6조제1항제4호의2가목 관련)

1. 지원대상: SNS 서포터즈
2. 지원내용: SNS 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1인당 월 20만원 이하

나. 실비: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별표 2]

물품지급 등 세부기준(제6조제1항제4호의3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당
홍보물품 지급	분기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홍보사업 추진 및 홍보물품 제공	1개당 1만원 범위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점가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1인 1만원 범위)
상점가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1인 1만원 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 3. 채용행사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 4. 취업 컨설팅 및 교육 등 구직자 역량강화 사업
- 5.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 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1. 구직 상담자 및 구인 기업관련자
- 2. 채용행사 참여 기업관련자 및 구직자
- 3. 취업 컨설팅 등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
- 4.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 5. 그 밖의 일자리분야 유관기관 담당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홍보 계획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입 독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의 원활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2.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구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구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5. “표준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제한 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

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

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

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
2.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등의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7.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③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 사업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디자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구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국장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 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한다.

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

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동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심의 대상(제2조 및 제8조제2항 관련)

1. 공공공간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공공공간	공원, 광장(지하광장 포함), 자전거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공공시설물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도로시설물	가로등, 펜스, 볼라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억 이상
편의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시설물	맨홀덮개,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공공시각매체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억 이상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 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 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비고: 위 표의 총 사업비는 각종 보상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

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원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보급 및 연계 활성화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지류식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이 끝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②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거쳐 공개모집하되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도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

⑤ 해당 통에 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동에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반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해당 통·반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4. 통·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
7. 동장이 통장활동실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8.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

11. 통·반장이 스스로 그 직의 해임을 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해임된 통·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 다시 임명될 수 없다.

제4조의3 (통·반장의 임기 등)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통장을 임명한 동장이 관할하는 행정동 내에서의 총 재임기간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였으나 후보자나 적격자가 없어 신임통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통에 한정하여 현임통장(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임통장을 선출하기 직전에 통장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던 통장을 포함한다.)을 재임명할 수 있다.

④ 행정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변경 및 통·반 조정으로 재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때, 재임명된 통장의 재임기간 산정은 이전 동에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임명”으로, “명시한 공고문을 15일 이상 공고하여”를 “명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절차”를 “임명절차”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조례 제7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을 “(통장임명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제4조제5항에 따라 통장임명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장을 교부하며, 위촉장”을 “임명장을 교부하며, 임명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사 결과 통보 및 위촉순위)”를 “(심사 결과 통보 및 임명 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장위촉심사결과서”를 “통장임명심사결과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촉”을 “임명”으로, “위촉할”을 “임명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통장 위촉)”을 “(통장 임명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제4항에 따른 재위촉”을 “제4조제4항에 따른 재임명”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위촉”을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재임명”으로,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은”을 “임명은”으로, “위촉대상자”를 “임명대상자”로, “위촉장”을 “임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사항”을 “임명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하였을”을 “임명하였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다음날”을 “전날 또는 다음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된 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된 기간에 1년을 가산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3회 연임하였거나 8년의 임기를 마친 통장은 해당 통장을 임명한 동장이 관할하는 행정동 내에서 재임명될 수 없다.

③ 이 규칙 시행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어 재직하였던 자 중 총 재임기간이 8년 미만인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다만, 이전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 공 고 제 호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동 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년 월 일 ~ 월 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 ①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 출 서 류

-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동 주민센터 비치)

마. 임명절차 및 방법

-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장이 임명
-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 가능(총 9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032)718-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 축 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 로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 통장 임명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통장임명심사결과서

안건	동 통장임명에 따른 후보자 심사		
심의내용	통장후보자 중 적격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하여 통장 후보자 순위를 결정함		
순위	성명	평점	비고
1			
2			
3			
4			
5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 통장임명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동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동 통장임명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된 내용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통장임명심사위원

(서명)

동장 귀하

임 명 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 로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으로 임명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 동장

통 장 · 반 장 등 록 부

동

결 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학력	경력	직업	임면일	
동장	팀장	담당자								임명자	해임자

주) 가로 서식으로 사용

통 장 증 발 급 대 장

동

발급번호	사진	발급일자	통장명 통입일자	통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발급 일자	재발급 사유	회수 일자	회수 사유	결재		
												담당자	팀장	동장

주) 발급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가로 서식으로 사용)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 등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시 또는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2. 영업장 배치도면 1부.

- 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 ③ 구청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폐업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먼지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등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의 위생적 제조·가공·판매를 위한 냉장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및 냉동이 필요하지 않거나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급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근에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 내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리장 직선

거리 10m이내에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조리장에는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수도관과 직접 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2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12.1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변경)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변경)
개요 및 범위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912.65	2018년~2024년 (당초) 2018. 8. ~ 2023.12.31. (변경) 2018. 8. ~ 2024.12.31.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178-12번지 일원		사업면적 100,000㎡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			
사업 필요성	기존 구도심인 석남동 일원은 인구감소 및 건축물 노후화 등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대상지 주변 대규모 공장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쇠퇴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행			
사업내용 및 효과	마중물(14개사업), 부처연계(1개사업), 지자체(3개사업), 민간투자(1개사업), 공기업(1개사업)			상세 ③ 참조
재원조달방안	912.65억원 (국비 133, 시 111.5, 구 368.15, 공기업 및 기금 250, 민간 50)			상세 ④ 참조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연차별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상세 ④ 참조

활성화계획도



※ 위 활성화 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변경없음)

○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상 생	마을주민과 기업이 갈등에서 상생으로 변화
주거복지 실현	임대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마을
사회통합	주민주도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마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
도시경쟁력 강화	생활인프라가 늘어나는 마을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변경)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합 계			912.65	-	
소 계			200.0	-	
마중물 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석남완충녹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7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조성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도로개선사업	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안길 정비 및 보행로 개선 ◦ 테마길 등 주민제안 조성 	
		마을공방조성	22.20	◦ 지역 주민 소규모 창업 및 재능 나눔을 위한 공간 조성	
		기반시설확충 (상생마을 뉴딜사업 구역내)	5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 조성 (당초 27면 → 변경 30면)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475㎡) 	
	주거지 지원사업	집수리 사업	9.81	◦ 건축외관개선사업 지원(169세대)	
	지역역량 강화사업	주민역량강화	17.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대학 ◦ 아이랑 문화랑 ◦ 일자리 배움학교 	
		상생마을 발전소	6.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케어 ◦ 마을 집수리단 ◦ 환경개선활동 ◦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운영 	
		성과관리	1.20	◦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부처 협업	소계		383	-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383	◦ 석남완충녹지 조성 (도시숲조성사업)
소계			29.65	-	
지자체 사업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2.2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 안전과 관련된 사업 추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6	◦ 간판 교체를 통한 경관개선	
	진입로개설		22.85	◦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입로 개설	
민간 투자	소계		50	-	
	주차장, 둘레길 등 조성		50	◦ 지역 상생방안 협약서에 따른 마을 단장사업 시행	
공기업 투자	소계		250	-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250	◦ 석남동 171-1일원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변경없음)

사업부문	사업명	사업효과
		파급효과
생활 인프라개선	석남완충녹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 확보로 구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공동이용 시설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석남완충녹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 주민역량강화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div>
	기반시설 확충	·상생마을 뉴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마을의 새로운 거점공간 조성 및 균등한 기반시설 제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주민역량강화 ▶ 마을공동체 활성화 </div>
	도로개선사업	·신설 주차장으로 주차수요를 유도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긴급차량 접근성 향상 ·불법주정차 방지로 보행환경 개선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로 테마가 있는 이면도로 정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주민 참여 유도 (디자인 공모) ▶ 주민 역량 강화 ▶ 가로환경 개선 </div>
주거 지원사업	집수리 사업	·노후주택 경관개선을 통한 마을 이미지 개선 ·거주환경 개선 및 주택만족도 향상 ·집수리 비용 절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거주환경 개선 ▶ 거주의 지속 가능성 확보 </div>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원주민의 재정착 및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 거주환경 개선 ▶ 주거의 질 향상 </div>
지역역량 강화사업	현장지원센터 (행정-중간조직-주민)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운영을 통한 주민의 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도시재생대학운영 ▶ 주민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div>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 참여 확대 및 사업추진 경험 습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일자리 학교, 건축학교, 환경개선 ▶ 교육·문화·환경 일자리 등 지속적인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div>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운영	·주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마을로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근간 마련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 주민 자력 강화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div>

4]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변경)

○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사업유형	세부사업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기 활 용 (기 타 자 보 조 등)			
				재 정 보 조	부 처 연 계	시 도	시 군 구	공 기 업	민 간				
합 계			912.65	133.0		111.5	368.15	125.0	50.0	125.0			
재 정 보 조 사 업	마 중 물 사 업	소 계		200.0	100.0		50.0	50.0	-	-	-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소 계		164.53	95.10	-	34.72	34.72	-	-	-	
			석남완충녹지내 복합커뮤니티센터		77.29	38.65	-	19.32	19.32	-	-	-	
			도로개선사업		7.59	3.80	-	1.90	1.9	-	-	-	
			마을공방조성		22.2	11.10	-	5.55	5.55	-	-	-	
			기반시설확충		57.45	41.55	-	7.95	7.95	-	-	-	
		주거지 지원사업	소 계		9.81	4.9	-	2.45	2.45	-	-	-	
			집수리 사업		9.81	4.9	-	2.45	2.45	-	-	-	
		지역역량 강화사업	소 계		25.66	-	-	12.83	12.83	-	-	-	
			주민 역량강화	현장지원센터		11.6	-	-	5.8	5.8	-	-	-
				도시재생대학		2.82	-	-	1.41	1.41	-	-	-
				아이랑 문화랑		1.0	-	-	0.5	0.5	-	-	-
				일자리 배움 학교		2.32	-	-	1.16	1.16	-	-	-
			상생마을 발전소	실버케어		1.02	-	-	0.51	0.51	-	-	-
				마을 집수리단		2.0	-	-	1.0	1.0	-	-	-
				환경개선활동		1.7	-	-	0.85	0.85	-	-	-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운영		2.0	-	-	1.0	1.0	-	-	-
			성과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1.2	-	-	0.6	0.6	-	-	-
		부처협력사업	소 계		383.0	33.0		61.5	288.5	-	-	-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383.0	33.0		61.5	288.5	-	-	-	
지자체사업	소 계		29.65	-	-	-	29.65	-	-	-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2.2	-	-	-	2.2	-	-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6	-	-	-	4.6	-	-	-			
민간투자사업	소 계		50.0	-	-	-	-	-	50.0	-			
	주차장, 들레길 등 조성		50.0	-	-	-	-	-	50.0	-			
공기업투자사업	소 계		250.0	-	-	-	-	125.0	-	125.0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250.0	-	-	-	-	125.0	-	125.0			

○ 예산집행 계획(변경)

(단위 : 억원)

사업유형	세부사업		총사업비	단계별 자원 투입									
				기 투입	1차년	'19	'20	'21	'22	'23	'24		
합 계			912.65	283.0	45.89	31.22	146.00	96.32	21.84	27.32	261.06		
재 정 보 조 사 업	마 중 물 사 업	소 계		200.0	-	4.09	6.22	56.00	73.47	21.84	27.32	11.06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소 계		164.53	-	3.42	2.25	49.53	66.02	14.06	24.07	5.18
			석남완충녹지내 복합커뮤니티센터		77.29	-	-	2.10	38.47	31.69	1.51	3.52	
			도로개선사업		7.59	-	-	-	4.92	0.19	2.48		
			마을공방조성		22.2	-	3.42	0.15	6.14	4.78	7.22	0.49	
			기반시설확충		57.45	-	-	-	-	29.36	2.85	20.06	5.18
		주거지 지원사업	소 계		9.81	-	-	0.82	4.18	2.96	1.85	-	
			집수리 사업		9.81	-	-	0.82	4.18	2.96	1.85	-	
		지역역량 강화사업	소 계		25.66	-	0.67	3.15	2.29	4.49	5.93	3.25	5.88
			주민 역량강화	현장지원센터	11.6	-	0.55	2.41	2.18	2.70	2.24	1.52	
				도시재생대학	2.82	-	0.12	0.30	0.04	0.56	0.69		1.11
				아이랑 문화랑	1.0	-	-	-	0.01	0.03	0.25		0.71
				일자리 배움 학교	2.32	-	-	-	0.01	0.45	0.43	0.87	0.56
			상생마을 발전소	실버케어	1.02	-	-	-	-	0.07	0.04	0.21	0.70
				마을 집수리단	2.0	-	-	0.10	-	0.27	1.20	0.01	0.42
				환경개선활동	1.7	-	-	-	0.05	0.20	0.38	0.01	1.06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운영	2.0	-	-	-	-	-	0.70	0.41	0.89
			성과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1.2	-	-	0.34	-	0.21	-	0.22	0.43
부처협력사업	소 계		383.0	283.0	10.0	-	90.0	-	-	-	-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383.0	283.0	10.0	-	90.0	-	-	-	-		
지자체사업	소 계		29.65	-	6.8	-	-	22.85	-	-	-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2.2	-	2.2	-	-	-	-	-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6	-	4.6	-	-	-	-	-	-		
	진입로 개설		22.85	-	-	-	-	22.85	-	-	-		
민간투자사업	소 계		50.0	-	25.0	25.0	-	-	-	-	-		
	주차장, 둘레길 등 조성		50.0	-	25.0	25.0	-	-	-	-	-		
공기업투자사업	소 계		250.0	-	-	-	-	-	-	-	250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250.0	-	-	-	-	-	-	-	250		

* 세부사업별 예산 및 단계별 자원 투입 계획은 전체 사업 준공 후 세부사업비 정산 시 조정·변경 예정.

5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변경없음)

- 대상지의 특성 및 계획 목표와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각 세부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6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변경없음)

- 해당없음

7 관련서류 열람

- 열람 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서구 서곶로 323, ☎ 032-560-3013)
 - 상생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서구 율도로 16번길 18, ☎ 032-299-7008)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21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2.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제한지역: 서구 연희동 90-1번지 일원
- 제한면적: 12,412㎡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청사(보건소) 조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일대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사업시행 이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필요한 이축 소요 최소화

3.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고시일(23. 12. 18.)로부터 3년 (필요 시 2년 연장)

4. 개발행위허가 제한행위

○ 제한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제5호의 개발행위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적치행위(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 예외사항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해제지역 개발사업 전까지 존치하는 가설건축물 등)
 - * 단, 위 예외사항이라 할지라도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 허가의 효력기간, 복구조건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음.

- ① 추후 해제지역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 ② 공익상의 필요성
- ③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 ④ 향후 보상이나 투기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 여부

5.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12필지			13,226	12,412		
1	연희동	54-7	철	478	246	인천광역시	
2	연희동	55	답	339	209	사유지	
3	연희동	56-4	전	272	195	사유지	
4	연희동	59-2	답	269	156	사유지	
5	연희동	86-1	답	1,257	1,230	사유지	
6	연희동	88	답	1,865	1,825	사유지	
7	연희동	89	답	3,102	3,052	사유지	
8	연희동	90-1	전	4,811	4,794	사유지	
9	연희동	90-2	잡	416	416	사유지	
10	연희동	91	철	106	96	인천교통공사	
11	연희동	92	철	300	182	인천교통공사	
12	연희동	107-3	전	11	11	인천광역시	

6.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계획과(☎560-4682) 및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718-0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 - 213호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25호(2021.07.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서구 신현동 146-6번지 일원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m ²)	비고
신설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 신현동 146-6번지 일원	75,026.8	-

다.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74,619.9	-	74,619.9	99.5	-
제3종일반주거지역	406.9	-	406.9	0.5	-
합계	75,026.8	-	75,026.8	100.0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9	8~9	국지도로	347	소2-21	소2-15	일반도로	-	인고 제980호 (86.7.9)	-
기정	소로	2	11	8~9	국지도로	345	소2-21	소2-15	일반도로	-	경고 제53호 (77.3.11)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60	신현 중1-27 (137-30)	신현 소2-21 (134-4)	일반도로	-	경고 제53호 (77.3.11)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60	신현 중1-27 (139)	신현 소2-21 (137-3)	일반도로	-	경고 제53호 (77.3.11)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222	소2-21	소2-17	일반도로	-	인고 제508호 (82.05.27.)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343	신현 소2-21 (147-2)	석남 소2-15 (199-10)	일반도로	-	경고 제53호 (77.3.11)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434	신현 중1-54 (133)	신현 중1-53	일반도로	-	경고 제53호 (77.3.11)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121	신현 중1-54 (140-5)	신현 소2-13 (154-7)	일반도로	-	경고 제53호 (77.3.11)	-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455	신현 중1-27 (144-1)	신현 중1-53 (78-1)	일반도로	-	인고 제90-71호 (90.6.2)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건축분야(변경)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현동 140-88	신현동 146	154	169	- 지하1층: 마을관리소 - 지상1층: 마을공방 - 지상2층: 교육장
		신현동 147-18		154	- 지상1층: 마을문화센터 - 지상2층: 모임공간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변경)

○ 기정

구 분	정비계획	개 요	추진시기
소통하는 예쁜 원(園)마을	주민 거점 공간조성	• 공공공지 마련 및 주차공간 확보(1개소)	2022년
	안전마을조성	• 보행환경 안전개선 - 고보조명 5개, 솔라표지병 638개, 비상벨 2개,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4개, LED보안등 4개, 미러시트지부착 53개등, 노후계단 정비 6개소 • 소방장비 정비 - 보이는 소화기 설치 3개소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 연장 약 1,239m, 면적 약 10,105㎡	〃
경관이 아름다운 원(元)마을	스토리텔링기반 테마골목 조성	• 골목길 커뮤니티 디자인 • 테마 골목길 조성 - 연장 약 448m, 면적 약 2,126㎡	2022년 ~2023년
	마을경관 관리	• 마을투어 코스 및 상품개발 • 마을해설사 육성 및 교육 • 마을축제 명소화	2021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원(ONE) 마을	마을 아카이빙	• 백서 제작 및 발간 • 주민기자단 교육 및 운영	〃
	주민거버넌스구축	• 주민역량강화 •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성	•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 • 마을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

○ 변경

구 분	정비계획	개 요	추진시기
소통하는 예쁜 원(園)마을	주민 거점 공간조성	• 주민쉼터 공간 마련	2023년
	안전마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 안전개선 - 고보조명 3개,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4개, LED보안등 2개, 노후계단 정비 2개소 소방장비 정비 - 보이는 소화기 설치 3개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 연장 약 1,239m, 면적 약 10,105㎡ 	2022년 ~2023년
경관이 아름다운 원(元)마을	스토리텔링기반 테마골목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길 커뮤니티 디자인 테마 골목길 조성 - 연장 약 448m, 면적 약 2,126㎡ 	2022년 ~2023년
	마을경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투어 코스 및 상품개발 마을해설사 육성 및 교육 마을축제 명소화 	2021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원(ONE) 마을	마을 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서 제작 및 발간 주민기자단 교육 및 운영 	〃
	주민거버넌스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역량강화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 마을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m ²)		(관계법령에따름)	(관계법령에따름)	
신설	신현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75,026.8	주택 및 주거 복합	제2종 일반주거지역		관계법령 에 따름
				60%이하	250%이하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에 따름 (염곡로, 원창로, 울도로 건축선 지정 : 도로와 대지 경계에서 2m)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선 지정(변경) 고시 적용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m ²)	명칭	면적 (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75,026. 8	-	-	211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사항으로 개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북측에 초등학교 1개소 및 중학교 1개소, 동측에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남측에 유치원 1개소, 대상지 내 유치원 1개소 위치 대상지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풍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도로 및 골목길관련 정비사업 시행 시 배수를 고려하여 진행토록 관리 구역 내 강우에 따른 피해발생 지역의 풍수해 대책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마련 -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수시 점검 시행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가 등 사전예방 조치 	-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골목소화기를 비치 개별 주택 신축 및 주택 리모델링 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 	-

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 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 • 출입문 주변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출입시 배후 감시가 가능토록 미러시트지 부착 • 골목길은 전방시야 확보 및 고립된 공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급적 직선으로 계획하고, 보행자를 위한 조명을 설치 • 주택 주변이나 골목길의 조경수목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식재 • 골목길의 가로시설물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 	-
접근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출입문에는 시건장치 또는 보안시설을 설치 •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하고,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타고 오르거나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 • 주택과 주택사이에 형성되는 이격공간에는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영역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길에서의 주택, 보행공간, 가로시설 및 조경 식재공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주택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 조성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이나 벽화 등의 적용을 권장 가로시설물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계획 건축물의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하도록 유도 	-
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도시설의 배치와 디자인을 권장 골목길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하여 활성화를 유도 	-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 정원 정비, 집과 창고 수리 및 정원 정비 등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 	-
안전 시설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범용 CCTV는 주택가에서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상벨은 가로등, 전신주, CCTV 주변, 방범시설이 부족한 취약한 공간 등에 설치하되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며,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커뮤니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방범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 	-

9)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해당없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1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 마을 투어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운영목적
집수리 및 마을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택 집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 담장, 대문 등 지역경관 대상 주택개선 사업 • 마을환경정화활동 • 공구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주택 개선 및 저층주거지 정주성 확보 • 골목길 개선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 주민 스스로 고치고, 지역을 관리하는 시민문화 조성 • 일부 전문분야 집수리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지역 중장년층 경력 일자리 조성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아카이빙 교실 • 요리교실, 붓글씨 등 주민 취미프로그램 • 주민공동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며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모임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를 위하여 주민리더 발굴 육성
주민경제 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경영·회계교육 • 홍보마케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조직 참여 주민들의 기업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비즈니스 내실화 및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교육 진행
청소년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민·진로상담 프로그램 • 보드게임 등 놀이프로그램 • 공예·취미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 인근 청소년 전용 공간 부재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 • 요일별 또는 특정 날짜별, 청소년 니즈를 반영한 고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투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 마을여행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현원마을 지역이미지 개선 및 마을여행을 통한 수익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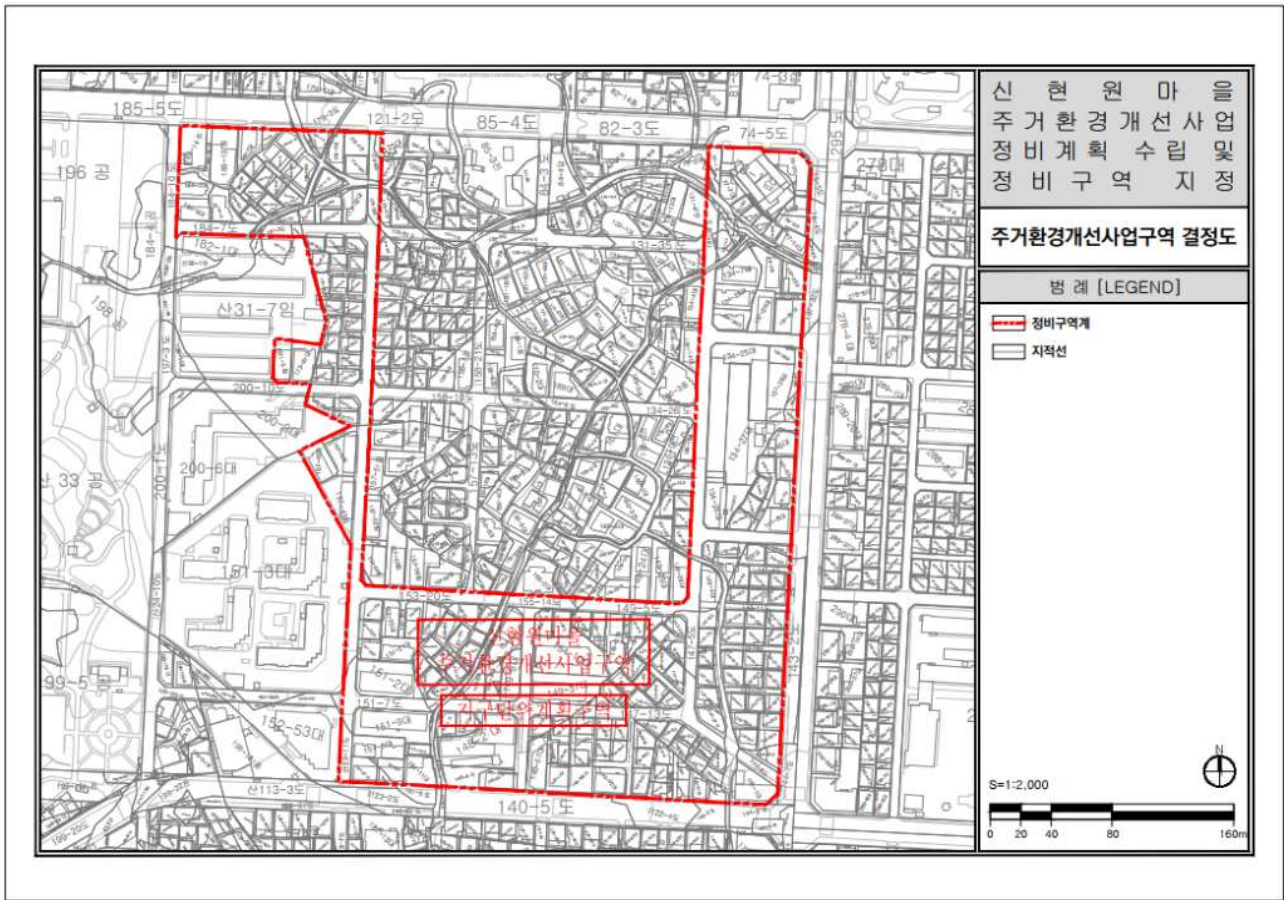
1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계획 수립 기간 중 주민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 설립 예정 정기총회를 통한 연간 활동 결과 공유 및 신년 추진계획 논의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더불어마을 사업을 포함한 마을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 및 진행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수리 및 마을관리 서비스, 취미프로그램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주민경제조직 역량강화,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 마을투어 프로그램 등 진행 	-

[첨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첨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5)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 - 2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검단신도시 AB2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주)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장진현)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21-1블록
 - 나. 대지면적: 28,226㎡
 - 다. 사업규모: 연면적 100,839.2414㎡
 - 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7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308,783,200천원
4. 사업기간: 2024. 4. 1. ~ 2026.12.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끝.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2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82-1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2. 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2-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32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82-1 (금곡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62-3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82-2 (금곡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42-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79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66 (당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7-2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17번길 38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96-20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02 (원창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랗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26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24 (가정동)	20160701	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7-5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5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18-4, 1318-5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20 (당하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두번째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47-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89번길 38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47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89번길 34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9-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718번길 34-1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2-18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102번길 12 (원창동)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09번길 53 (원창동)	소유자 신청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2-18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40번길 3 (가정동)	건물멸실	20090922	가경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77번길 14 (가좌동)	건물멸실	20090922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현우산업주식회사 가동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23 - 1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북청라하우스토리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15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69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3년 12월 18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4년 3월 18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32-718-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23 - 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대성베르힐 라 프리미어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 1로 154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70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3년 12월 18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4년 3월 18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32-718-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25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2.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안 제3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명위원회 구성(전체 및 민간위원 수) 변경 및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요건 정비(안 제3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면심의의 근거 규정(안 제5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2, 팩스 560-274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안 제3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명위원회 구성(전체 및 민간위원 수) 변경 및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요건 정비(안 제3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면심의의 근거 규정(안 제5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명위원회에 출석하는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

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